

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속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이철식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철식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교부를 규정함(안 제4조~제5조)
- 지원금의 환수 및 현장조사를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(안 제8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진영)

가. 본 제정 조례안은

- 각종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나.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는 “농작물재해보험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‘농작물, 임산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, 병충해, 조수해,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’으로 규정하여, 상위법인 「농어업 재해보험법」 제2조에 근거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3조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농작물 재해대비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19조제1항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”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4조는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, 상위법인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도내에 소재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안 제5조는 지원금의 교부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한 것은 부정수급의 방지,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6조는 보험료의 부정 수급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과는 다른 특징이 있고 고의적인 보험목적물 훼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- 안 제7조에서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험료에 대한 지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농작물의 경우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농가마다 작황이나 피해상태가 매우 상이하여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며, 현장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8조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농업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, 농작물재해보험은 주요사업자인 농협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어,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,
- 또한,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용에 관해 농민들의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고, 개선의 타당성 또한 인정되므로 정기적인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각종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농업인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,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아울러, 관련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절차도 적절히 이행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「없음」
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